

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자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연결전 연결연도소득 계산	①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				
	소득조정 금액	② 익 금 산 입			
		③ 손 금 산 입			
	④ 차 가 감	소득금액 (①+②-③)			
	⑤ 기부금	손금산입 한도초과액			
	⑥ 기부금	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 액 손 금 산 입			
	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④+⑤-⑥)				
연결법인별 조정항목 연결 제거	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 의 금 산 입				
	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
	⑩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
	⑪ 기 부 금 손 금 산 입 한 도 초 과 이월액 손금불산입				
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	⑫ 차 가 감 계 (⑦+ ⑧- ⑨- ⑩+ ⑪)				
	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
	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 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
	⑮-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				
	⑮-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
	⑯ 연결법인간 자산 ⑮익 금 불 산 입 양 도 소 득 ⑮익 금 산 입				
	⑰ 연결법인간 자산 ⑯손 금 불 산 입 양 도 손 실 ⑯손 금 산 입				
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액	⑲ 차 가 감 계 [⑫-⑬+⑭-(⑮-1)+(⑮-2)-⑯+⑰-⑱-⑲]				
	⑳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				
	㉑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				
	㉒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(⑲-⑳+㉑)				
	㉓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				
	㉔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 금 산 입				
	㉕ 연결수정소득금액 (㉒+㉓-㉔)				
연출세액의 개별귀속 및	㉖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				
	㉗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(㉒+㉖)				
	㉘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
	㉙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				
	㉚ 비 과 세 소 득				
	㉛ 소 득 공 제 액				
납부 할 세 액 계 산	㉜ 과 세 표 준 개 별 귀 속 액 (㉒-㉓-㉔-㉕)				
	㉝ 연 결 세 율				
	㉞ 연 결 법 인 별 산 출 세 액				
	㉟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	
	㊱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	
	㊲ 가 산 세 액				
	㊳ 가 감 계 (㉞-㉟-㊱+㊲)				
	기 납 부 세 액	㊴ 중 간 예 납 세 액			
		㊵ 원 천 납 부 세 액			
		㊶ () 세 액			
㊷ 소 계 (㊴+㊵+㊶)					
㊸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					
㊹ 합 계 (㊷+㊸)					
㊺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					
㊻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㊹-㊺)					
토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양 차 도 익	㊼ 등 기 자 산			
		㊽ 미 등 기 자 산			
	㊾ 비 과 세 소 득				
	㊿ 과 세 표 준 (㊼+㊽-㊾)				
	㋀ 세 율				
	㋁ 산 출 세 액				
	㋂ 감 면 세 액				
	㋃ 공 제 세 액				
	㋄ 가 산 세 액				
	㋅ 가 감 계 (㋁-㋂-㋃+㋄)				
㋆ 기 납 부 세 액					
㋇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㋅-㋆)					
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㋈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			
	㋉ 세 율				
	㋊ 산 출 세 액				
	㋋ 가 산 세 액				
	㋌ 이 자 상 당 액				
	㋍ 납부할세액(㋊+㋋+㋌)				
㋎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(㋇+㋍)					
㋏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				
㋐ 납 부 (환 금) 할 세 액 (㋎-㋏)					

작성 방법

*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<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>

- ㉮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㉮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㉮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㉮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- ㉯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⑥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㉺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